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82호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서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과격하고 부정적인 의미인 퇴치로 표현하고 있어, 조류가 항공안전을 위해 배척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중립적인 의미의 용어로 변경 추진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퇴치’ 용어를 ‘충돌예방’으로 변경(안 제5~6조, 제8조, 제11조, 제17~18조, 제27조, 제30~3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및 문의처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 전화 : 044-201-4344 / 팩스 : 044-201-5635